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현장중심형 실용기술개발 지원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1년 이내에 개발가능한 현장 중심형 실용기술개발을 지원
- 공고규모 : 기술료 13억원 이내
  -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 : 7억원 이내
    - ※ 최대 1년간 과제당 2천만원 이내, 35개 이내의 팀 지원 예정
    -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 단기간, 소규모 자본의 투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특허등록이 가능하거나 농산업 현장에 보급·확산 적용이 가능한 기술

#### < 적정기술 개발 예시 >



#### (옥수수 까는 기계)

과테말라 등 중앙아메리카를 여행하던 과학자가 옥수수를 손으로 까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고, 간단한 기계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50여명의 노동력을 대신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제 : 6억원 이내
  - ※ 최대 1년간 과제당 3억원 이내, 2개 팀 지원 예정

□ 공고기간 : '14. 10. 15.(수) ~ 11. 14.(금) 까지

□ 접수기간 : '14. 10. 30.(목) ~ 11. 14.(금) 18:00 까지

##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기술개발 과제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이 농업인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산업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 (농업인 협업 필수)에 한함

\*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허 등 성과물도 공동 소유하여야 함

※ 세부과제로 나뉘지 않는 단일과제이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 연구소 등)

- 농산업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제 : 특허 등 선행연구 성과를 보유한 연구기관이 반드시 연구팀에 참여 필요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는 위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참조)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학부·석·박사 과정 포함)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은 불가

### 3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물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물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일 당일은 신청자 과다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신청과제 유형별 서식 : 별첨 포함)

③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신청과제 유형별 서식 : 별첨 포함)

※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③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필요

## 4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요약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이외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5

## 선정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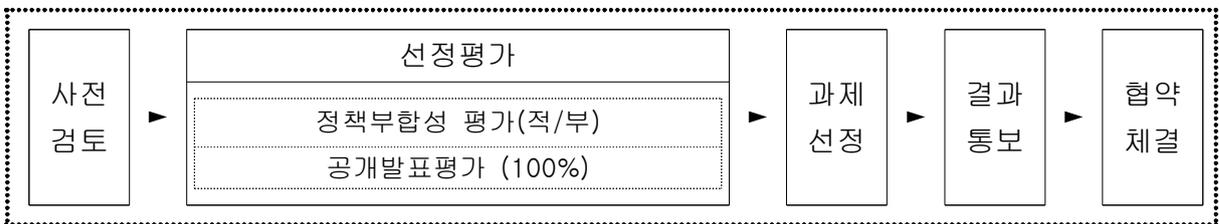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3장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관련규정 준용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선정절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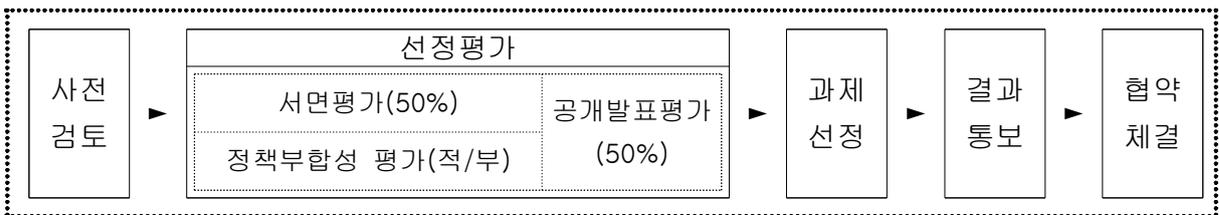
○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

- 작물/축산/식품/생산시스템·농기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7항에 따라 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서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100%로 반영하여 산출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6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공개발표평가는 사업을 신청한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기술가치평가, 특허 관련 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7명으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 예정
- 정책부합성평가와 공개발표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의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에 따름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제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3장제2절의 자유응모과제의 평가 선정 방법 적용



## 6

##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제반사항
  - 본 공고문의 사업선정·평가 이외의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최종 평가, 성과관리 등 사업 제반사항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
- 연구장비 또는 시설 구축관련 사항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참조
- 기타사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참조

## 7

## 문의처 및 기타

---

### □ 문의처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문의 : 사업총괄실(031-420-6752, 6753)
- 과제선정 및 연구 관련 문의 : 사업관리실(031-420-6767)
- 접수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 <붙임> 제출서류 서식

- 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 기관 자체양식
- ②-1 연구개발계획서(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 : 별첨 포함)
- ②-2 연구개발계획서(고령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개발 : 별첨 포함)
- ③-1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 : 별첨 포함)
- ③-2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고령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개발 : 별첨 포함)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 연구개발 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6.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지식재산권		논문		학술 발표	기술 거래	교육 지도	사업 화	기술 인증	인력 양성	정책 활용	홍보 전시	기 타
	출원	등록	SCI	비 SCI									
연구수행시 성과목표(A)													
연구종료후 성과목표(B)													
종료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종료 3차년도													
종료 4차년도													
종료 5차년도													
합 계(A+B)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논문/학술발표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활용/양성
기술거래	기술이전,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7.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등(10개 이내)

8.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예시)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것을 요청받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동의하여 모든 결과를 기탁하겠습니다.

9.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10.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금액	비율	비고	
	세목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나.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합 계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기타급으로 표기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및 비고란에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으로 표기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연구장비·재료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구입							
임차							
합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비

· 설치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③ 시약 및 재료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						
합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④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	○○○원/건 × ○○건 =	원
---------	----------------	---

⑤ 시험분석료

○ 시험분석료	○○○원/건 × ○○건 =	원
---------	----------------	---

⑥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3) 연구과제추진비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원
---------------	---

- \* 참여직급별료(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원
-------	---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식대	원
------	---

(4) 연구활동비

①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합 계	원

② 전문가 활용비 등

○ 전문가 활용비			원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원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	
○ 회의장 사용료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원고료			원	
○ 통역료			원	
○ 속기료			원	
○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액 (단위: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계				
기술도입명			전문가 활용비 등 합계	원

\* 비교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를 기재

③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원
○ 임상시험		원
○ 기술정보수집		원
○ 특허정보조사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계		원

(5) 연구수당

○ 연구수당	○○○○원(인건비) × ○○% =	원
--------	--------------------	---

(6) 간접비

○ 간접비	○○○○원(인건비+직접비) × ○○% =	원
-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단, 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적으로 명기

11. 참여기업 현황(기업이 주관인 경우)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재무	총자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기자본	백만원		
	매출액	년도		○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주소	본사	전화번호	00)000-0000	
	공장	전화번호	00)000-0000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00)000-0000	
	E-Mail	FAX	00)000-0000	

<별첨>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별첨 1)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각자 제출하여야 함



## ※ 작성방법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 추진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 연구개발을 통한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및 연구결과 활용 목표 등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합니다.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3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 참고
-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의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 연구개발 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

### 나. 과제별(세부·협동)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 \*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6.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지식재산권		논문		학술 발표	기술 거래	교육 지도	사업 화	기술 인증	인력 양성	정책 활용	홍보 전시	기 타
	출원	등록	SCI	비 SCI									
연구수행시 성과목표(A)													
연구종료후 성과목표(B)													
종료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종료 3차년도													
종료 4차년도													
종료 5차년도													
합 계(A+B)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논문/학술발표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활용/양성
기술거래	기술이전,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건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7.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

8.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등(10개 이내)

9. 연구책임자(세부, 협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과제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참여율
제1세부 (주관)						
제2세부						
제1협동						
제2협동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10.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11. 세부 · 협동 · 위탁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과제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제1세부 (주관)								
제1협동								

1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합계		비고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나.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연도	제1세부(주관)		제2세부		제1협동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다.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 연구기간 중 해당년차(예 : 1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 (1)-(가)의 아래에 [제1세부] 또는 [제1협동] 등으로 구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과제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액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합계											

- \* 과제구분은 제1세부, 제1협동 등으로 표시
-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기타급으로 표기
-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및 비교란에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으로 표기
-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 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비

·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③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④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      ○○○원/건 × ○○건 =	원
-----------------------------	---

⑤ 시험분석료

○ 시험분석료            ○○○원/건 × ○○건 =	원
-----------------------------------	---

⑥ 시제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4) 연구과제추진비

[제1세부]

① 국내 출장여비

○ 국내여비(○박 ○일)	원
---------------	---

- \* 참여직급별(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사무용품비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원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③ 회의비

○ 회의비	원
-------	---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

④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식대	원
------	---

(5) 연구활동비

[제1세부]

① 국외 출장여비

○ 국외여비(○박 ○일)		원
여비 합계		원

- \* 참여직급별(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②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합계		원

③ 전문가 활용비 등

○ 전문가 활용비		원		
○ 국내외 교육 훈련비		원		
○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		
○ 회의장 사용료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원고료		원		
○ 통역료		원		
○ 속기료		원		
○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액 (단위: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고
합계				
전문가 활용비 등 합계				원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 - how 등)를 기재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원
○ 임상시험	원
○ 기술정보수집	원
○ 특허정보조사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원

⑤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원
----------------------	---

(6) 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 =	원
--------------------------------	---

(7)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관명)	금액
	원

(8) 간접비

[제1세부]

○ 간접비      ○○○○원(인건비+직접비) × ○○% =	원
-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단, 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적으로 명기

13.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 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 의 학생인건비 집행 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14.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분류	
결정사유	

\* 별첨 3의 보안등급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주요 내용만을 명시하며,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15.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6. 참여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재무	총자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기자본	백만원		
	매출액	년도		○
		백만원		○
당기순이익	백만원	○		
주소	본사	전화번호	00)000-0000	
	공장	전화번호	00)000-0000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00)000-0000	
	E-Mail	FAX	00)000-0000	

<별첨>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별첨 1)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각자 제출하여야 함

2) 연구과제의 3P분석(특허, 논문, 제품시장)(“별첨 2” 양식 참조)

3) 선행연구성과에 대한 증빙서류(별첨 3)

\* “별도 서식이 없으며, 특허증, 특허출원증, 시제품 보고서 등에 대해 원본대조필(연구책임자 확인)한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별첨 2]

## 특허, 논문, 제품(시장) 분석보고서

신청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 1. 본 연구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기술명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목표수준	비고
		우리나라	연구신청팀		
(기술 1)					
(기술 2)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 2)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 100% 대비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팀의 기술수준 표시
- 3)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대비 목표수준 제시
- 4)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교란에 작성

### 2. 특허분석

#### 가. 특허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국내, 국외(미국, 일본, 유럽)
특허 DB	특허정보원 DB( <a href="http://www.kipris.or.kr">www.kipris.or.kr</a> ), Aureka DB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및 초록

#### 나. 특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특허건수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 검색건수를, 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의미
- 3) 핵심특허는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기준으로 분석

### 3. 논문분석

#### 가. 논문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미국, 일본, 유럽
논문 DB	Aureka DB, pubmed DB(www.ncbi.nlm.nih.gov), 국회도서관(www.nanet.go.kr)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초록 및 키워드

#### 나. 논문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논문건수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을 의미
- 3) 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

### 4. 제품 및 시장 분석(최신의 자료로 작성하되, 반드시 출처 명시)

#### 가. 생산 및 시장현황

- 1) 국내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 2) 국외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 나. 개발기술의 산업화 방향 및 기대효과

- 1) 산업화 방향(제품의 특징, 대상 등)

○

2)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항 목 \ 산업화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직접 경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액						
합 계						

- 1) 직접 경제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 2)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 비용절감효과 등 추정치
- 3) 부가가치 창출액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등 추정치

5. 3P(특허,논문,제품)분석을 통한 연구추진계획

가. 분석결과 향후 연구계획(특허, 논문, 제품 측면에서 연구방향 제시)

1) 특허분석 측면

- 기존 특허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특허 등을 국내 및 국외에 출원할 계획임
- 

2) 논문분석 측면

- 기존 논문은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 등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계획임
- 

3) 제품 및 시장분석 측면

-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임
- 

[별첨 3]

- 선행연구성과에 대한 증빙서류

“별도 서식이 없으며, 특허증, 특허출원증, 시제품 보고서 등에 대해 원본대조필(연구책임자 확인)한 증빙서류 제출로 같음”

## ※ 작성방법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 추진체계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 연구개발을 통한 연차별 연구성과 목표 및 연구결과 활용 목표 등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5개 이내)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합니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3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 참고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합니다.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의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별첨 1>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과제명 :

○ 주관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 유사 중복성 검토의견(2010년~현재)

성명	년도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 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홍길동	2011	벼 품종 개발....				
	2012	콩 품종 개발....				
	2012	옥수수 품종 개발....				
	2013	마 품종 개발....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지원 년도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 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 NTIS(www.ntis.go.kr)의 '유사과제 검색'기능과 FRIS(www.fris.go.kr)의 '유사·중복성 과제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조회·작성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란에 체크하여 제출

<별첨 2> 주관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기관 자체양식으로 제출

<별첨 3>

## 농업인 공동연구 확인서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함)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농업인		생년월일 (연락처)	년 월 일 (010-0000-0000)						
<p>상기 연구과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 적정기술개발과제로 신청함에 있어 주관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농업인은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종료시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거나 산업화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li> <li>2. 상기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수행기간 동안 상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시설·기자재 등을 상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제공할 것임을 확인합니다.</li> <li>3. 상기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및 농업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li> </o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2014년    월    일             </div>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주관연구책임자 (소속)</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30%;">(인)</td> </tr> <tr> <td>농업인 (주소)</td> <td>(성명)</td> <td>(인)</td> </tr> </table> <p style="margin-top: 20px;">○○○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p>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농업인 (주소)	(성명)	(인)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농업인 (주소)	(성명)	(인)							



<별첨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접수마감일 현재)

과제 구성			수행과제 목록							비고		
구분	성명	순번*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형태	참여율	3책5공	참여제한여부			
주관	연구 책임자	OOO	1	농진청	벼 품종 개발....	2000.8.~2013.8	세부책임자	20%	책	○		
			2	지경부	콩 품종 개발....	2000.8.~2013.8	협동책임자	30%	책	X		
			3					세부연구원		공		
			4					협동연구원		해당없음		
			5					위탁연구원		해당없음		
	참여 연구원											
세부2												
협동1												

\* 참여형태 : 세부·협동·위탁 / 책임자·연구원 중 해당사항 기재

\* 3책 5공 : “책”, “공”, “해당없음” 중 선택하여 기재

\*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참여제한자는 “O”, 참여제한자가 아닌 경우 ”X“ 표기

\* 비고 : 3책5공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참고의 <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1~8번에 따라 사유를 기재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명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작성방법

### < 3책 5공 적용기준 >

1.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2. 연구과제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 주관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도 '책'으로 산정
  - \*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공'으로 산정

### 1. NTIS(www.ntis.go.kr)에서 각 연구자의 과제 참여 정보를 조회한 후 작성

- \* 범부처 정보공유 → R&D과제 참여정보 → 해당 연구원 조회
- \* 각 세부·협동연구기관별로 작성하되 각 연구기관별로 책임자와 연구원을 취합하여 작성(주관연구기관장 날인 필수)

### 2. NTIS에서 조회된 내용 중 수행중인 과제는 순번대로 모두 작성

- \* 중복된 과제는 비고란에 “3번 과제의 하위과제임” 등의 방법으로 표기

### 3. NTI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행중인 과제는 최하위 순번에 작성

### 4. 3책5공에 해당되는 과제는 “책”, “공”으로 표기

### 5. “3책5공 적용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그 해당 사유를 비고에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해당 사유가 표기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또는 요약서)

### <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과제>

1.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
6. 경상연구과제(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7.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8. 위탁연구과제

<별첨 2>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과제명 :

○ 책임자급(주관·세부·협동) 기존 수행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견(2010년~현재)

구분	성명	년도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 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주관	홍길동	2011	버 품종 개발....				
		2012	콩 품종 개발....				
2세부	김영희	2012	옥수수 품종 개발....				
		2013	마 품종 개발....				
1협동	김철수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지원 년도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중복	유사	해당 없음	검토의견(중복성 등)

\* NTIS(www.ntis.go.kr)의 '유사과제 검색'기능과 FRIS(www.fris.go.kr)의 '유사·중복성 과제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조회·작성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란에 체크하여 제출

<별첨 3> 연구책임자(주관·세부·협동)의 재직증명서

※ 기관 자체양식으로 해당자에 대하여 모두 제출